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560
----------	------

제안년월일 : 2026년 3월 12일

제안자 : 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현재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의 과제 제안자는 의회사무처 각 부서 및 상임위원회로 한정되어 있음.
- 이에 과제 제안자의 범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포함하여 상설특별위원회로 활동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결산 등 소관 전문 분야에 필요한 연구용역과제를 제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연구용역 제안부서’ 정의를 마련하여 연구용역 과제 제안 부서 범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포함함(안 제2조제3호 신설).
- 나. 연구용역 제안부서의 정의를 하위 조항에 반영함(안 제6조, 제9조 및 제10조제1항).
- 다. 그밖에, 연구용역 활용결과 보고서의 작성 대상과 제출부서를 명확히 표현함(안 제10조제2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연구용역 제안부서”란 연구용역 과제를 제안하는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이하 “의회사무처”라 한다) 각 부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말한다.

제6조제1항 중 “의회사무처 각 부서와 상임위원회”를 “연구용역 제안부서”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상임위원회”를 “연구용역 제안부서”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임위원회”를 “연구용역 제안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제별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법제과”를 “연구용역 제안부서”로, “작성하여”를 “작성하여 법제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법제과는 그 보고서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2. (생략)</p> <p><u><신 설></u></p>	<p>제2조(정의)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연구용역 제안부서”란 연구용역 과제를 제안하는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이하 “의회사무처”라 한다) 각 부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말한다.</u></p>
<p>제6조(연구용역 과제 제안) ① 의회사무처 각 부서와 상임위원회는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를 작성하여 법제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6조(연구용역 과제 제안) ① <u>연구용역 제안부서</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연구용역제안서 평가위원회) ①·② (생략)</p> <p>③ 법제과와 <u>상임위원회</u>는 제6조에 따라 제안된 소관 연구용역 과제의 평가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p>	<p>제9조(연구용역제안서 평가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연구용역 제안부서</u>----- ----- -----.</p>
<p>제10조(연구용역의 관리) ① 연구용역의 관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법제과 및 <u>상임위원회</u>에서 수행한다.</p>	<p>제10조(연구용역의 관리) ① ----- ----- ----- <u>연구용역 제안부서</u>-----.</p>

1. ~ 3. (생략)

② 과제별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법제과는 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활용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른 정책위원회 위원장(이하 “정책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연구용역 제안부서-----

----- 작성하여
법제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법
제과는 그 보고서를 -----

-----.